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6. 6. 27.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6월 2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6. 6. 2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엄혜숙 )

#### 가. 제안이유

-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 정신건강검진 지원대상, 지원내용,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환수
- 정신건강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기능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조례안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비용(본인부담금)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먼저,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법령의 범위 안’이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는바, 정신건강검진·상담 비용 지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 위반은 없음.
- ‘그 사무에 관하여’란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를 의미하는바, 정신건강검진·상담비용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으로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정신건강검진·상담비용은 개별 조례가 없어도 법령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환자를 유치하려면 개별적으로 관할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사전승인이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보조금 지원 근거

가 규정 되어야함을 의미함. (보건복지부 지침)

-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50대(50세~59세)의 우울증 진료 환자가 전체 연령에서 20.8%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sup>1)</sup>, 또한, 50대의 자살자도 전체 연령에서 20.5%로 조사되어<sup>2)</sup>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조기 은퇴로 인한 노후 불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검진 및 상담을 지원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려는 것은 매우 타당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2016년 4월말 현재 영등포구 50대 인구는 전체 378,315명의 15.8%인 59,784명이며,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1천1백만임.

- 제정안의 체계를 살펴보면,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조례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검진기관의 선정, 지원대상, 지원내용,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등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역협의체 기능,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환수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1) 2012 서울시 정신보건지표

2) 2014 통계청 자료

## 4. 수정안 요지

### 가. 수정이유

- 구민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바, 특정 연령대에 한정하도록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장기적인 정책추진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연령대를 삭제하여 우리 구민 전체의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제목 중  
“50대”를 삭제하며,
- 안 제1조 중  
“50대”를 “주민의”로 하며,
- 안 제2조제1호중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정신건강검진·상담”으로  
“50대를 대상으로”를 삭제하고
- 안 제2조제3호 중  
“50대”를 삭제하며,
- 안 제5조 중  
“50대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를 “50대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며”로 함.

##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관련 152
----------	-----------

제안년월일 : 2016. 6

제출자 : 허홍석 위원 외 1인

## 1. 수정이유

- 구민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바, 특정 연령대에 한정하도록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장기적인 정책추진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연령대를 삭제하여 우리 구민 전체의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조례안의 제목 중  
“50대”를 삭제하며,
- 안 제1조 중  
“50대”를 “주민의”로 하며,
- 안 제2조제1호중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정신건강검진·상담”으로  
“50대를 대상으로”를 삭제하고
- 안 제2조제3호 중  
“50대”를 삭제하며,
- 안 제5조 중  
“50대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를 “50대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며”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의 제목 중  
“50대”를 삭제하며,
- 안 제1조 중  
“50대”를 “주민의”로 하며,
- 안 제2조제1호 중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정신건강검진·상담”으로  
“50대를 대상으로”를 삭제하고
- 안 제2조제3호 중  
“50대”를 삭제하며,
- 안 제5조 중  
“50대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를 “50대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당사  
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며”로 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50대</u>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50대</u>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u>(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u>50대를 대상으로</u>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li> <li>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말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li> <li>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u>50대</u>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li> </ol>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정신건강검진·상담</u>(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li> <li>2. (제정안과 같음)</li> <li>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li> </ol>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대상은 50대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② (제정안과 같음)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제정안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대상은 50대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제정안과 같음)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 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정신건강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영등포구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건강검진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정안과 같음)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정안과 같음)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검진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정안과 같음)

제11조(환수조치 등) ①~③ (제정안과 같음)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을 검진기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52 호
----------	---------

제출연월일 : 2016.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 정신건강검진 지원대상, 지원내용,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환수
- 정신건강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기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

나. 예산조치 : 서울시 교부예산 간주처리 후 사용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심사 실시(신설, 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원안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원안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6.04.14~2016.05.04,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50대를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말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대상은 50대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정신건강검진내역

### 3. 검진비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영등포구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건강검진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환수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검진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43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을 검진기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